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관련 법적 지원 근거 신설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40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관련 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	2
※ 참고자료	
1. 세종학당 현황	6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5. 9. 17.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관련 법적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9조)

가. 개정안 요지

-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관련 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 제5항제5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생략)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6. (생략) ⑥ ~ ⑩ (생략)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u>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축·운영 지원</u>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세종학당재단에서 2022년도부터 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세종한국어평가(SKA)'를 시행하고 있음.

세종한국어평가(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개요
○ 주관 : 세종학당재단 ○ 목적 : 한국어 학습자의 실용적 한국어 능력 평가 ○ 대상 :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 및 예비 학습자 등 ○ 영역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의사소통 전 영역 ○ 시험 수준 : 초급~고급 수준 평가 ○ 시험 횟수 : 매년 3회 ○ 시험 활용 : 비자 발급요건, 입학·취업 요건 등

- 세종한국어평가는 세종 학당 학습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로, 학문 목적의 범용평가를 지향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평가 목적이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세종한국어평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세종학당의 한국어능력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어 등의 효과적 보급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세종학당재단이 운영 중인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세종학당재단 한국어능력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생략)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동일)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⑤ ----- ----- -----.	(개정안과 동일)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동일)
<u><신설></u>	<u>5.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u>	<u>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u>

	<u>인증 제도 구축 · 운영 지원</u>	<u>학습자를 위한 한 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 행</u>
5.·6. (생 략)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개정안과 동일)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세종학당 현황' 25.10월 기준)

대륙	거점·일반·협업형 세종학당(수)	소계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교육원 세종학당(수)	소계	합계
아시아	네팔(1), 대한민국(1), 동티모르(1), 라오스(2), 말레이시아(3), 몽골(4) 미얀마(1), 바레인(1), 방글라데시(1), 베트남(19), 사우디아라비아(1), 아랍에미리트(3), 아제르바이잔(1), 요르단(1), 우즈베키스탄(8), 이란(1), 인도(6), 인도네시아(8), 중국(18), 카자흐스탄(2), 캄보디아(5), 쿠웨이트(1), 키르기스스탄(4), 타지키스탄(2), 태국(4), 투르크메니스탄(1), 파키스탄(1), 팔레스타인(1), 필리핀(8)	110	베트남(1), 아랍에미리트(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3), 카자흐스탄(1), 태국(1), 필리핀(1)	12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일본(14),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1), 태국(1)	19	30개국 141개소 (56%)
유럽	독일(4), 라트비아(1), 러시아(3), 루마니아(1), 룩셈부르크(1), 리투아니아(2), 벨기에(1), 불가리아(1), 세르비아(1), 스웨덴(1), 스페인(1), 슬로바키아(1), 슬로베니아(1), 아이슬란드(1), 에스토니아(1), 영국(2), 우크라이나(1), 이탈리아(1), 조지아(1), 체코(1), 크로아티아(3), 튀르키예(1), 포르투갈(1), 폴란드(2), 프랑스(3), 핀란드(1), 헝가리(3)	41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웨덴(1), 스페인(1), 영국(1), 오스트리아(1), 이탈리아(1), 튀르키예(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12	러시아(4), 영국(1)	5	28개국 58개소 (23%)
아메리카	멕시코(1), 미국(8), 브라질(3), 아이티(1), 에콰도르(1), 엘살바도르(1), 우루과이(1), 칠레(1), 캐나다(2), 콜롬비아(1), 쿠바(1), 페루(1),	22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캐나다(1)	6	미국(3), 브라질(1), 파라과이(1)	5	14개국 33개소 (13%)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1), 말라위(1), 모로코(1), 보츠와나(1), 에스와티니(1), 우간다(1), 이집트(2), 케냐(1), 코트디부아르(1) 탄자니아(1), 튀니지(1),	12	나이지리아(1), 남아프리카공화국(1) 이집트(1)	3	-	-	13개국 15개소 (6%)
오세아니아	호주(2)	2	호주(1)	1	뉴질랜드(1), 호주(1)	2	2개국 5개소 (2%)
소 계	79개국 187개소		30개국 34개소		13개국 31개소		
총 계	87개국 252개소						